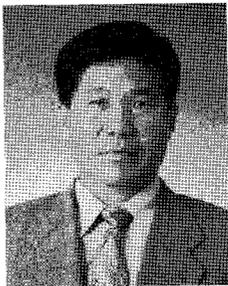




품종보호제도와 품종 대상작물 안내

1. 우리나라의 품종보호제도



농학박사 **박형순**
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

○ 품종보호제도 개요

- 신품종을 육성한 유종가에게 당해 품종을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 해주는 제도
- 우리나라는 1998년 부터 동제도를 실시 하고 있으며 2002년 1월 식물 신품종 보호연맹 (UPOV)에 가입

○ 우리나라 품종보호 제도의 주요 내용

품종보호 대상 작물 : 2004. 12월현재 155개 작물

- * 품종보호 대상작물은 작물별 국제경쟁력 수준,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 하여 고시
- * 2009년까지는 전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 작물로 지정 할 계획임
- * 품종의 보호 요건(종자산업법 제12조)
 - 신규성, 구별성, 균일성, 안정성, 고유한 상품명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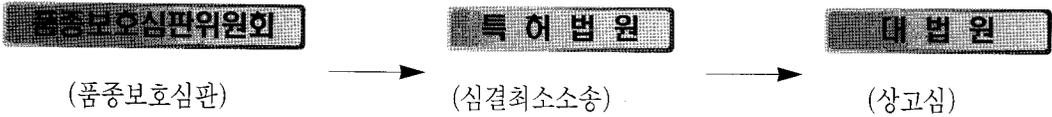
2. 품종보호 심판제도

○ 심판제도개요

- 품종보호심판이란 품종보호 부여 절차에 있어서 품종보호권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분쟁을 행정 심판을 말한다.
-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품종보호 침해소송과는 달리 품종보호 심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림부소속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음.

• 품종보호소송-

- 품종보호심판이란 품종보호 부여 절차에 있어서 품종보호권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분쟁을 행정 심판을 말한다.
-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품종보호 침해소송과는 달리, 품종보호심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림부 소속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다.
- 품종보호심판(품종보호권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분쟁)→품종보호심판위원회 품종보호침해소송 (품종보호권 관련 침해금지, 손해배상 소송 등)→일반법원
-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



대법원에 상고 할 수도 있으므로 품종보호심판은 사실상 제 1심 법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

- 품종보호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3인의 심판관 합의체가 준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품종보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임

3. 품종보호심판위원회 구성및 운영

○ 위원회 설치 및 기능

- 위원회 설치일자(근거) : 1998년 8월11일 (종자산업법 제91조)
- 기능 : 국립종자관리소의 품종보호출원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청구되는 심판과 재심을 관장

• 심판의 종류-

- 거절사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의 심판(종자산업법제93조)
- 품종보호결정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의 심판(종자산업법 제94조)
- 보정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의 심판(종자산업법 제92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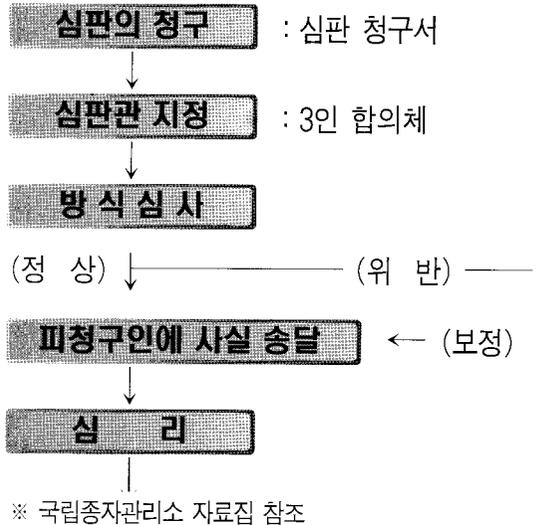
○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구성

- 심판위원장 : 농림부 식량정책국장
- 심판위원 : 농림부(상임위원), 농진청, 특허청등의 전문가 8인 이내로 구성

○ 최근 품종보호 심판사례

- “길조무” 품종보호 거절 불복심판 : 인용심결('04.11)
- “아라리오”(장미) 품종보호 무효청구 심판 : 기각심결('04. 8)

4. 심판절차도



5. 품종보호 제도와 품종보호 대상작물

○ 품종보호제도란 무엇인가?

- 새로운 품종을 육성한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'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여 주는 제도'
- 현재종자분야 선진국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품종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동 제도를 도입하여 연차적으로 대상작물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.

* 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여 주는 지적 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와 유사한 제도

○ 품종보호제도의 필요성은?

- 신품종 육성자에게 품종육성에 따른 노력의 대가와 연구개발 비용 회수를 보장함

으로써 우수 품종 개발과 육종투자 확대를 촉진하는데 있다.

- 또한 외국의 우수 품종을 도입하여 농업인에게 이들 품종을 재배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업소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.

* 품종보호제도가 일시적으로 종자비 상승을 가져올 수 있으나 국내 품종개발 활성화와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

○ 품종보호 출원·심사·등록

- 품종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서(2부), 특성설명, 육성과정, 종자시료, 천연색사진, 출원수수료 납부증명서 등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국립종자관리소 민원실에 제출.
- * 신품종은 신규성, 구별성, 균일성, 안정성, 고유 품종명칭을 갖추어야 한다.
- 출원서 및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 하자가 없으면 출원내용을 일반인에게 “품종보호공보”를 통해 공개하고 품종명칭 및 신규성 심사, 재배시험 등 심사절차를 수행한다.
- 심사결과 품종보호요건을 충족하면 출원 공고(60일)와 등록사정을 거쳐 품종보호권등록증을 발급

○ 품종보호권이란 무엇인가?

- 신품종 육성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지적재산권의 하나로써 보호품종의 생산, 증식, 조제등의 실시를 독점하며 타인이 무단으로 실시한 때에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.
- * “실시”란 품종보호의 종자를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.

○ 품종보호권 존속기간?

- 채소, 화훼 등 일반 작물의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이다.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25년이다.

* 품종보호권은 존속기간 동안에만 효력을 가지며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누구나 동 품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

○ 품종보호권이 발생하는 시점은?

- 품종보호권은 출원된 품종이 서류 및 재배시험을 거쳐 우리나라에서 최종적으로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(품종보호권이 발생된 날)부터 생기게 된다.
- 다만 품종보호권이 등록되면 품종보호권자는 출원공고일(05.3.12일 부터는 출원공개일)부터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전까지 이루어진 실시에 대해서 임시보호권이 부여되므로 소급하여 권리주장이 가능하다.

○ 품종보호권 침해시 벌칙은?

- 종자산업법에서는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- * 품종보호권 침해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없이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 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을 말함.

6. 품종보호대상작물 지정

- 97.12.31(27종)-

- 식량작물(6) : 벼, 보리, 콩, 옥수수, 감자, 밀
- 채소류(14) : 무, 배추, 양배추, 고추, 토마토, 오이, 참외, 수박, 호박, 파, 양파, 당근
- 과수류(3) : 사과, 배, 복숭아
- 화훼류(1) : 비모란 선인장
- 사료작물(3) : 라이그라스, 툼페스큐, 레드클로버

- '00.5.1(30종)-

- 식량작물(2) : 귀리, 고구마
- 채소류(3) : 멜론, 녹색꽃양배추, 꽃양배추
- 과수류(3) : 포도, 유자
- 화훼류(14) : 리시안스스, 페튜니아, 고데치아, 봉선화, 무궁화, 히야신스, 시클라멘, 개나리, 알

- 스트로메리아, 금어초, 펜지, 데이지, 상사화류, 조개나물
- 특용작물(7) : 참깨, 들깨, 땅콩, 유채, 당귀, 황기, 느타리버섯
- 사료작물(1) : 오쳐드그래스
- 기 타(1) : 인삼

- '01.7.1(31종)-

- 화 훼 류(21) : 덴드로비움, 나도풍란, 풍란, 새우란, 장미, 백합, 국화, 아이리스, 튜립, 글라디올러스, 포인세티아, 맨드라미, 스토크, 백일초, 물망초, 시레네, 금잔화, 알릿섬, 아게라툼, 원추리류
- 특용작물(10) : 지황, 구기자, 마(산약), 시호, 도라지(길경), 결명자, 토천궁, 맥문동, 구릿대(백지), 식방풍

- '02.6.17(25종)-

- 식량작물(6) : 호밀, 팔, 녹두, 완두
- 채 소 류(3) : 가지, 박, 파초이(청경채, 백경채, 백채)
- 과 수 류(1) : 기위프루트(참다래)
- 화 훼 류(9) : 극락조화, 가틀레야, 온시디움, 옥잠화, 종꽃, 펠라고늄, 모란(목단), 칼랑코예, 산취선인장
- 특용작물(8) : 영지버섯, 강활, 더덕, 하수오, 택사, 황금, 작약, 홍화(잇꽃)

- '03(31종)-

- 식량작물(1) : 메밀
- 채 소 류(7) : 딸기, 부추, 케일, 근대, 아욱, 치커리, 엔다이브
- 화 훼 류(17) : 독일영경귀, 텔피니움, 플록스, 행운목, 란타나, 필로덴트룸, 클레마티스, 고무나무, 킬란드시아, 심비디움, 아네모네, 리아트리스, 아데니움, 아디안툼, 오스문다,

- 드라세나, 피페로미아
- 특용작물(5) : 독활, 만삼, 향부자, 지모, 치자
- 사료작물(1) : 알팔파

- '08(23종)-

- 식량작물(3) : 조, 기장, 수수
- 채 소 류(3) : 셀러리, 파슬리, 춘채
- 과 수 류(4) : 감, 자두, 살구, 매실
- 특용작물(6) : 양송이, 감초, 두충, 산수유, 천마, 팽이버섯
- 산림식물(6) : 표고버섯, 밤나무, 느티나무, 뱃나무, 단풍나무, 대추

- 2009 (기타 전작물)-

- 식량작물 : 동부, 잠두 등
- 채소작물 : 마늘, 토란, 생강 등
- 과수작물 : 감귤, 양앵두 등
- 화훼작물 : 관음죽, 벤자민, 야자류 등
- 특용작물 : 만가닥, 잎새버섯 등
- 사료작물 : 화이트클로버, 티모시 등
- 산림식물 : 잔디 등
- 수산식물 : 김, 미역, 다시마 등

○ 2004년 12월 품종보호대상식물

- 식량작물(2) : 강낭콩, 울무
- 채 소 류 (4) : 갓, 콜라비(순무양배추), 순무, 쪽갓
- 화 훼 류(31) : 다알리아, 알리움, 프리틸라리아, 글록시니아, 칼라, 철쭉류, 무스카리, 오니소갈럼, 안스리움, 크로커스, 마릴리스, 수국, 카네이션, 거베라, 안개초, 군자란, 스타티스, 베고니아, 센토레아, 팔레뉴시스, 매발톱꽃, 용담, 큰용담, 초롱꽃, 섬초롱꽃, 눈개쭉부쟁이, 보춘화(춘란), 한란, 패랭이꽃, 프리지아
- 특용작물(5) : 오미자, 일당귀(왜당귀), 삼주(백출), 일천궁(천궁), 진흙버섯 